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mjk@snu.ac.kr)

본 논문은 최근 지역무역 체제에서 도입된 디지털통상 규범을 협상 전개 과정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핵심 규범의 발전과 통상법 쟁점을 연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무역 자유화를 지지하고 디지털경제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관세, 비차별 대우, 투명성, 국제표준 협력에 관한 조항이 채택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요구한다.

한편,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 앞으로 많은 쟁점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논문은 데이터 관련 조항들을 대표 사례로 연구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디지털통상 협정이 디지털경제 관련 광범위한 사안에 적용되지만 '디지털 제품'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법적 모호성과 쟁점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데이터무역에 대한 핵심 규범으로 비차별 의무가 채택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디지털 무역의 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법률 쟁점이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통상 규범상 디지털경제의 상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공공정책 시행 사이의 균형이 추구되지만, 제도적 효과 측면에서 향후 많은 구체화 및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디지털경제의 상호운영성이 강조되고 제도적, 기술적 표준이 핵심적인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였다.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경제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디지털무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ASDEA)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mjk@snu.ac.kr. 이 연구에 대해 조언해주신 안덕근 교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집필을 도와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혜림 박사와 국제통상전략센터 문희은 연구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20S1A5B5A16083716).

- 목차**
- I. 서론
 - II.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시사점
 - 1. WTO 전자상거래 협상
 - 2. FTA 전자상거래 협상
 - 3. 미국의 디지털통상 협상과 규범
 - 가. CPTPP 전자상거래 조항
 - 나. USMCA 디지털무역 조항
 - 다.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
 - 4. 디지털경제 협정과 새로운 경향
 - 가.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
 - 나.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
 - III. 통상법 관점에서 본 주요 쟁점
 - 1.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
 - 가. '디지털 제품' 정의
 -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범위
 - 2. 디지털통상과 비차별 의무
 - 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 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 관행
 - 다. ASDEA 전자결제 조항과 비차별 의무
 - 3.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의 균형
 - 가. 데이터 자유이동과 공공정책
 - 나. 컴퓨팅설비 위치와 공공정책
 - 다. 자유무역과 공공정책의 균형에 대한 쟁점 분석
 - 라. USJDTA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건
 - IV. 결론

I. 서론

데이터 이동과 디지털 무역이 크게 성장하면서 디지털 통상이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예기치 못한 COVID-19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제 분야 곳곳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

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최근 디지털통상 규범에 대한 협상이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전되고 있다.

1998년 시작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디지털무역에 대한 한시적인 무관세 원칙 채택 외에는 지난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무역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지역무역 체제 협상이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데이터 자유 이동을 지지하고 불필요한 디지털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규범

표1 지역무역 체제의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

디지털통상 규범	조항	당사국	발효일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조항	18개 조항	(11개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2018.12.30. 순차 발효
USMCA 제19장 디지털무역 조항	18개 조항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2020.7.1. 발효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USJDTA)	22개 조항	(2개국) 미국, 일본	2020.1.1. 발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16개 모듈 69개 조항	(3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2021.1.7. 발효
호-싱 디지털경제협정 (SADEA)	38개 조항	(2개국) 싱가포르, 호주	2020.12.8. 발효

출처 : 김민정·양인창(2021) 재인용.

협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한-미 FTA를 비롯하여 CPTPP, USMCA 디지털무역 규범이다.¹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미국이 제시한 기본 디지털무역 규범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최근 이례적인 속도로 추진되었다.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자유이동과 인터넷 사용 기본 원칙 등 미국이 기존에 추진했던 규범을 핵심 제도에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신원, 핀테크와 규제테크 등 디지털경제에 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채택하였다. 비록 이 제도적 발전은 지역무역 규범이라는 틀에 국한되지만, 디지털통상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제도 발전

에 대한 일종의 추진동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제도적 함의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을 연구하였다. 최근 채택된 지역무역 협정을 중심으로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기본 원칙을 적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가상의 쟁점을 통상법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본 논문 2장에서는 WTO와 주요 FTA 전자상거래 협상 경위, 미국이 추진한 CPTPP, USMCA, 그리고 미국-일본 협정의 디지털통상 핵심 규범과 시사점,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호주의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에 나타난 제도적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협정 및 조항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3장에서는 디지털통상의 핵심 원칙 운용상 제기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를 기존의 통상법률 관점에서 분석한다. 협상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디지털 제품' 개념에 관한 쟁점, 디지털통상 규범상 비

¹ 광동철, 안덕근(2016), "아날로그 체제하의 디지털무역-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131.

차별 의무의 의미 그리고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정당한 공공정책 추구 사이의 균형 문제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지역무역 체제에서 추진된 디지털통상 규범의 확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II.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시사점

1. WTO 전자상거래 협상

WTO 체제가 발효한 즈음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 IT 버블이 형성될 정도로 디지털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 무선기기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한 정보통신 제품의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WTO 발효 이후에도 정보통신 제품의 국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었고 그 성과로 정보통신제품 수입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동 협정은 큰 맥락에서 보면 디지털산업의 국제무역을 확대하는 협상의 시초가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보통신 제품의 관세를 제거하는 상품무역 측면을 다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무역에 관한 논의가 필요했고, 미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

름을 지지하는 디지털무역 활성화와 규범 정립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지지를 받으며 동 사안을 WTO 아젠다로 제안하였고 WTO 무역개발위원회의 전자상거래(e-commerce) 협상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²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협상은 이후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최초의 전자상거래 다자 협상으로 추진되었다.³ 그리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을 채택하는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무관세 관행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년 회의를 통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가장 최근 있었던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에서도 무관세 관행(duty-free moratorium)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렇듯 실질적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영구화 하는 것에 대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근본적으로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최근 도입된 디지털통상 협정은 이 관행을 당사국 간 영구화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무관세 관행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의 1998년 작업계획에는 무관세 관행 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포함되었고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실을 맺고자 노력하

²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전자상거래 지침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체계(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수립하여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상거래 무관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³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이한영 (2007),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연구소.

⁴ Chen, Wallace and Clara Brandi (2019), “Governing Digital Trade-A New Role for the WTO”,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Briefing Paper No 6/2019.

였다.⁵ 그러나 디지털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WTO 회원국들마다 달랐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디지털통상 규범이 갖는 불확실한 제도적 효과 등으로 말미암아 최근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⁶

지난 20년 동안 담보 상태에 있던 WTO 디지털통상 협상은 2020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과 이로 인해 급물살을 타고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경제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디지털 기술혁신과 디지털경제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제한적으로나마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경제가 성장하고 디지털 교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데이터 경제가 위협적인 속도로 부상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디지털 표준 전략이 표면화되면서 무역 질서 정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세, 산업보조금 정책, 디지털서비스 제도 개혁, 시장경쟁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다자 질

서 확립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논의에 관심이 있는 일부 국가들이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사실상 다자협상을 재개할 것을 합의하였다.⁷ 우리나라도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⁸ 그리고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12월 86개 협상 참여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통합 협정문 초안을 마련되었고, 2021년 예정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속도를 내고 있다.⁹

2. FTA 전자상거래 협상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이 1998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 이후 거의 진전되지 못하자, 당시 디지털무역 자유화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던 미국은 지역무역 협상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¹⁰ 2000년대 FTA 전자상거래 협상이 점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FTA 조항을 통해서 조금씩 규범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요르단-미

5 1998년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WTO Work Programme on E-Commerce)을 바탕으로 중심 역할을 하면서 상품, 서비스, 무역관련지식재산권 이사회 및 무역개발 위원회와 전자상거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한다. 이한영(2008),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통상법률 81, 119-146.

6 이종석 (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p. 63-80.

7 71개국이 채택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은 협상 추진을 위한 탐색적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회원국의 참가를 촉구하였으며, 동 선언에 따라 2018년부터 수 차례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공동의장을 맡고 전자상거래 촉진, 개방성, 기업신뢰, 투명성에 관한 네 가지 분야별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개방을 지지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들과 반대하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석 (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67.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정부합동 대표단,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 2019년 10월 21일.

9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Co-Conveners' Update.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ecom_14dec20_e.htm> (최종방문일: 2020년 2월 15일))

10 미국은 다자협상과 양자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자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서 양자 협상을 통해 규범을 확산하고 지지기반을 넓히는 전략은 과거 GATS 협상 사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무역과 개발 이슈 협상도 중요한 사례가 되는데 다음을 참조한다. 박정준(2018),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pp. 251-288.

국 FTA(2000)의 공동성명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의 필요성'이 최초로 언급된 데 이어, 대만-니카라과 FTA(2006)에서 처음으로 협력 조항의 일부로 명문화되었고, 이후 유사한 문구가 미주 국가들의 FTA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¹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는 실질적인 규범 즉,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이다. 미국은 칠레(2003), 싱가포르(2003), 호주(2004)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영구적인 규범으로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원칙,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에 관한 조항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면서 디지털통상 규범의 체계를 만들어왔다.¹² 그리고 이 규범들을 바탕으로 추진된 한-미 FTA는 국경간 정보흐름에 관한 조항을 채택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는 등 전례 없는 디지털 규범들을 추가하면서 CPTPP 전자상거래 규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 미국의 디지털통상 협상과 규범

미국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무역 개방 협상은, 자국의 무역이익을 확대하고 중국의 데이터 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국

가 디지털 전략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³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자유 이동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고 혁신기술과 지식 등 미국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경제가 확산하면서 사이버 테러, 프라이버시 침해, 각종 사기와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보안과 사이버안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CP)TPP와 USMCA 디지털통상 규범에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디지털통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디지털무역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얼마나 보편화하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CPTPP는 WTO 무관세 원칙을 당사국 간 영구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¹⁴ 이는 점차 USMCA, USJDTA, 그리고 디지털경제 협정에도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무역 협상을 통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은 디지털통상 규범에서 가장 핵심 사안인데, CPTPP 규범은 이에 관한 기본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PTPP 규범은, 한미 FTA에 포함되었던 정보의 국간 간 이동,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조치,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

¹¹ Mira Burri (2020), "Data Flows and Global Trade Law", Big Data and Global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3. Burri(2020)는 캐나다-페루 FTA(2008), 한-페루 FTA(2011), 중미-멕시코 FTA(2011), 콜롬비아-코스타리카 FTA(2013), 캐나다-온두라스 FTA(2013), 캐나다-한국 FTA(2014), 일본-몽고 FTA (2015), 홍콩-뉴질랜드 FTA(2010) 등에서 유사한 문구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해당 조항은 당사국들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활동적인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경 간 정보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¹² 곽동철 (2020), "FTA 디지털무역과 기술표준", 안덕근, 김민정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박영사, p. 127.

¹³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Internet Regimes and WTO E-Commerce Negotiations.

¹⁴ CPTPP 제14.3조.

근 및 이용 원칙 조항 등 기본 규범을 채택하면서 강행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고, 스팸 메일, 사이버보안 협력 조항 등을 추가하면서 디지털통상 규범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협정의 조항들을 USMCA가 대부분 수용했고, 이후 디지털경제 협정들이 핵심 규범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규범의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가. CPTPP 전자상거래 조항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상 타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으로 미국 없이 11개국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TPP(CPTPP)'로 발효하였다. 도하개발아젠다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자 다자 체제를 보완하고 21세기형 무역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목표하에서 추진되었던 만큼, 이 협상은 결과적으로 이례적으로 수준 높은 규범을 채택하고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CPTPP 전자상거래 규범이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다는데 점에서도 이전까지 도입되었던 어떤 FTA 전자상거래 규범보다 훨씬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미 FTA와 비교하면 개인정보 보호, 컴퓨팅시설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요구금지에 관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화하고 디지털통상에 대한 국

제 규범 체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⁵ 더욱이 거의 모든 조항을 강행 규범으로 도입한 부분도 디지털통상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USMCA 디지털통상 조항

1992년 체결된 NAFTA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체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USMCA를 통해서 시대에 맞게 개선, 발전되었다. USMCA 협상에서는 최초로 '디지털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CPTPP 보다 더욱 강화된 디지털통상 규범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전반적으로 CPTPP 규범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 수준에서 보면 CPTPP에서 권고조항이었던 조항들이 USMCA에서 강행규범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협정에는 온라인 플랫폼, 양방향 컴퓨터 서비스, 공개 정부데이터 등 새로운 아젠다가 포함되고, 총 1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동 협정이 채택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조항은 비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을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으며 CPTPP에 도입된 규범이 USMCA에도 채택되었다는 제도적 의의가 있다.¹⁷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을 인정하고 이를 기준

15 김정곤 (2018),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p.65. 이종석 (2019),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원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pp. 73.

16 Mira Burri(2020), p.21.

17 CPTPP 제14.11조, USMCA 제19.11조.

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¹⁸ 특히 CPTPP보다 더욱 구체적인 조항의 도입에 대해서는, 유럽이 데이터보호 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데에 영향을 받은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평가도 있다.¹⁹

다. 미국-일본 디지털무역 협정

한편,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무역 협정은, 디지털통상 규범을 FTA 조항으로 도입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최초의 사례다. 큰 틀에서는 미-일 무역협정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나 독립협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CPTPP와 USMCA 규범 모델을 바탕으로 더욱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어 제도적 의의가 있다.²⁰ 즉, 동 협정의 22개 조항에는 일반예외, 안보 예외, 금융·환율정책 예외, 조세 예외 등 예외 조항이 포함되고,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버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 또는 공개 요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금융데이터 이동은 CPTPP에서는 제외되었던 사안이지만,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금융데이터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금융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사항이다.²¹ 또한 ICT 제품

에 대해 특정 암호화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ICT 제품이 사용한 암호화기술에 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한 조항은 CPTPP와 USMCA에서 TBT 규범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이,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삼입된 것이어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상대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협상을 거듭할수록 협상 아젠다를 확장하고 규범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도 CPTPP와 USMCA 수준의 디지털통상 규범을 요구하고 있고, WTO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더라도 FTA 혹은 양자 및 지역무역 체제에서 미국의 디지털통상 이익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²² 디지털통상 협상과 동시에, 미국의 가치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OECD, APEC, G-20 등 다각적인 국제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데이터 자유이동과 디지털경제 질서 정립을 위하여 표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부분도, 디지털통상 전략에 있어 반드시 주지할 사항이다.

3. 디지털경제 협정과 새로운 경향

가.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그리고 호주는 디지털경제 협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¹⁸ USMCA 제19.8조.

¹⁹ 유럽이 글로벌 질서와 기준을 '수출'하는 이른바 Brussels effect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며, Burri(2020)는 USMCA를 통해 미국이 APEC CBPR이나 OECD 원칙을 국제기준의 예로 수용한 부분은 미국 국내법 기준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사항이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Mira Burri(2020), p. 22.

²⁰ 김민정, 양인창 (2021),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2021 Vol.6, p. 23

²¹ 광동철 (2020), p. 127-8.

²²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Internet Regimes and WTO E-Commerce Negotiations.

탈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는 과거 브루나이와 함께 체결한 P4 협정이 (CP)TPP 협상의 시초가 되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과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국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한 디지털통상 규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디지털경제동반자 협정(DEPA)을 발효시켰는데, 동 협정은 16개 모듈의 약 70개 조항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디지털경제 분야, 기술, 이슈를 포괄한다.

동 협정은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기술혁신이 기업활동을 개선하고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만들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²³ 또한 디지털경제 제도, 그리고 디지털 상품·서비스가 국가 간 상호운영되기 위해서 표준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²⁴ 한편, UN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를 상기하고 포용적인 디지털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²⁵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²⁶

동 협정은 모듈이라는 독특한 무역협정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DEPA의 모듈은 다른 지역무역 협정들과 비교할 때 챕터(chapter)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모듈마다 그 모듈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모듈의 목적, 그리고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치 FTA 챕터가 각각의 WTO 협정 규범과 연결되는

것처럼, 각 모듈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대주제 혹은 분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고, 아직 연결되는 다자 규범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필요에 따라 각각의 모듈들이 무역협정의 일부로 쉽게 차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라는 평가도 있다.

동 협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데, 쉽게 말해서 통관과 전자상거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전자적 요소를 규율하는 기존의 통상 규범을 종합적으로 채택한 조항과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경제 분야에 관한 새로운 무역 현안을 채택한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종이없는 무역, 국내 전자상거래 제도, 물류, 전자 송장(invoicing), 특송(express shipments), 전자결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데, 기본 내용은 물류, 특송,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등 WTO 무역원활화 협정 규범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고 국내 전자상거래 제도가 UNCITRAL 원칙과 합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²⁷

그리고 모듈3과 모듈4은 기존 WTO 및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발전시킨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WTO 무관세 원칙을 영구화하고 디지털 상품에 대해 비차별대우 의무를 확산하는 한편, CPTPP와 USMCA TBT 규범으로 도입되었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ICT 제품에 관한 의무가 동 협정에 삽입된 점 또한 주목할 사항이다.²⁸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조항, 전자 방식의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한 조항, 그리고 컴퓨팅설비 위치

²³ DEPA 전문 1항.

²⁴ DEPA 전문 3항

²⁵ DEPA 전문 4항, 5항.

²⁶ DEPA 전문 7항.

²⁷ DEPA 모듈 2 비즈니스와 무역원활화.

²⁸ DEPA 모듈 3 디지털상품 대우와 관련 이슈.

에 관한 조항 등 디지털통상 규범의 핵심 원칙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²⁹

한편, 디지털경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자의 광고메세지 유포에 관한 규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³⁰, 이러한 규범들 역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CPTPP, USMCA 규범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디지털경제 이슈와 기술에 관한 새로운 조항들은, 기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무역 규범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이어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으로, 디지털신원, 핀테크, 인공지능, 데이터 혁신, 정부데이터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다.³² 당사국이 국내 제도와 표준을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및 지역기구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경제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포용적인 디지털통상을 추구한다는 점도, 기존의 무역과 개발 의제의 확장된 버전으로 볼 수 있다.³³

나.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

싱가포르와 호주는 디지털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경제 협정(ASDEA)을 추진하였다. 동 협정은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 협상을 거쳐 같은 해 3월 타결되었고 12월에 발효하였다. DEPA 협상에 잇따라 추진되었고 적용 범위나 규범 내용이 대체로 DEPA와 유사하며 디지털경제 분야, 기술 및 이슈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룬다. 동 협정은 싱가포르와 호주가 체결한 FTA 제17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 동 FTA 제14조 전자상거래 조항, 전문 및 제9조 금융서비스 조항을 개정한 디지털경제 협정으로서, 3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다.³⁴

두 국가가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2021년 현재 공동의장국이고 CPTPP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SDEA 협상은 애초부터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고 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동 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최신 규범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CPTPP에서 데이터 자유이동과 데이터 현지화 조항에서 제외되었던 금융서비스 분야가 동 협정에 포함되고 소스코드에 관한 규범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³⁵

한편, 서비스무역 협정의 통신분야 부속서

²⁹ DEPA 모듈 4 데이터 이슈.

³⁰ DEPA 모듈 5 광범위한 신뢰 환경, 모듈 6 비즈니스와 소비자 신뢰.

³¹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ICT제품에 관한 규범은 CPTPP 제8조에 대한 부속서, USMCA 제12조 분야별 부속서에 도입되었고, 미일 디지털통상 협정(USJDTA) 제21조 규정으로 포함되면서 최초로 디지털통상 규범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DEPA 제3.4조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 제7.3조 조항으로 도입되면서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³² DEPA 모듈 7 디지털신원(digital identities), 모듈 8 새로운 경향과 기술, 모듈 9 혁신과 디지털경제.

³³ DEPA 모듈 10 중소기업 협력, 모듈 11 디지털포용.

³⁴ ASDEA 제3조.

로 도입되던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동 협정에 포함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암호화기술 사용 ICT 제품에 관한 TBT 조항이 DEPA 협상에서부터 디지털 규범으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기존 무역규범 중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항이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편입된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³⁶

이외에도 ASDEA는 기존의 핀테크 협력 조항에서 더 나아가 규제테크 협력 조항을 추가했고³⁷ CPTPP에 채택되었던 인터넷 연결 요금을 공동 부담하는 조항을 채택했는데 이 점에서는 DEPA와 다르다.³⁸

ASDEA의 주요 특징은 제도적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상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호주와 싱가포르는 표준의 중요성과 역할을 단지 인정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많은 조항에서 표준 개발을 지지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 협정은 데이터 혁신에 관한 협력 사항으로 데이터 이동성 정책과 표준 개발을 언급하고 있다.³⁹ 또한, DEPA 규범과 마찬가지로 AI 거버넌스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양국이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에서 협력하고 국제기준 개발을 지지하기

로 합의하였다.⁴⁰ 또 다른 예는 핀테크와 규제테크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픈뱅킹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 협정은 디지털무역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도입했는데, 이로써 디지털통상 규범에서의 기술장벽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은 기술표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적 규범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 표준의 긍정적인 무역 효과 측면에 입각해서 표준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협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규범이 도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ASDEA의 표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호주와 싱가포르가 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양국의 디지털 기술 및 제도의 표준협력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두 국가는 데이터 혁신, 인공지능, 전자송장,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전자인증, 무역원활화,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신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정 이행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매우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⁴¹ 동 협정 규정이 대부분 약한 의무에 그치고 있는 규범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양한 이행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디지털무역 협상이 협정 타결의 선연적

³⁵ ASDEA 부속서 A 제28조. 소스코드 조항은 CPTPP, USMCA, USJDTA, DEPA를 거치면서 모델 규범이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데이터 이전에 관한 조항은 USJDTA와 동 협정이 채택하였다.

³⁶ ASDEA 부속서 A 제22조.

³⁷ ASDEA 부속서 A 제32조.

³⁸ ASDEA 부속서 A 제20조. CPTPP 제14.12조.

³⁹ ASDEA 부속서 A 제26조.

⁴⁰ DEPA 제8.2조, ASDEA 부속서 A 제31조.

⁴¹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 협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fat.gov.au/trade/services-and-digital-trade/australia-and-singapore-digital-economy-agreement> (최종방문일: 2021년 1월 30일)

차원을 넘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략 아래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PA와 ASDEA 협상국들은 디지털경제의 상거래와 국제 교류와 관련 있는 모든 사안을 최대한 통합해서 새로운 제도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국가들이 제시한 디지털통상 규범의 방향은, 데이터교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스팸메시지 규제를 강화해서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증, 서명, 결제, 신원 등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하고 AI와 같은 혁신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 간 협력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표준이나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서 국제표준 개발을 도모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무역 환경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분절되지 않도록 선제적 접근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²

Ⅲ. 통상법 관점에서 본 주요 쟁점

1.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

가. ‘디지털 제품’ 정의

국제무역 체제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을 구분하여 규율한다. GATT 협정이 잠정 발효되던 1948년 당시에는 상품 관세 인하가 통상협상의 주요 사안이었고 1970년대 동경라운드부터 비관세장벽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부속 협정이 발전하였다. 상품무역을 규율하던 GATT 체제는,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서비스무역과 지식재산권 협상을 거치면서, 서비스무역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규범을 포괄하는 WTO 체제로 발전하였다.⁴³ 이처럼 상품무역 체제에서 출발해서 서비스무역 체제를 포괄하는 협상 역사를 거치면서, 무역 규범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하게 되었다.

국제무역 체제의 이분법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⁴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전자상거래 조항에 도입된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개념에서 비롯된다. 국가들의 개방 약속이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마다 다르고 특히 서비스무역의 개방 분야와 수준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므로,

⁴² WTO 및 FTA TBT 제도는, 현재 나타난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을 적용하는 동시에, 국가들이 가능한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기술조치를 도입하고 특정 기술조치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통보 절차를 두는 등 다양한 선제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⁴³ WTO 협정은 부속서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협정과 부속서 1B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협정으로 구성된다.

⁴⁴ 이 쟁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이재민(2018),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의 통상협정에 대한 함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2호.

‘디지털 제품’이 상품(goods)인지 서비스(service)인지의 판단은 국가가 기존에 합의한 개방 의무와 민감하게 맞닿아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조항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를 도입한 최초의 규범이다.⁴⁵ 협상 당사국들은 이 정의 조항을 도입하여 디지털 제품의 법적 모호성을 일정부분 해소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의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포함하므로 서비스무역 체제의 컴퓨터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통신서비스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전달 매체에 고정되는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와 관계없다’는 문구를 보면 반드시 물리적 실체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전달 매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물리적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상품이 아니라고도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⁴⁶ 따라서 디지털 제품의 법적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미 FTA는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FTA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⁴⁷ 한편,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에서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및 투자 사안을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

한미 FTA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정의는 이후 다른 디지털통상 규범에도 도입되었다.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CPTPP 전자상거래 조항은 ‘디지털 제품’ 정의에서 ‘전달 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전달 매체’에 대한 정의를 누락시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⁸ 그리고 디지털 제품에는 디지털 화폐가 포함되지 않고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⁴⁹

CPTPP의 ‘디지털 제품’ 정의와 적용 범위는 USMCA 디지털무역 조항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달 매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디지털 화폐를 포함하지 않으며, 국경간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조치가 규율대상에 제외된다. 이러한 적용 범위는 USJDTA, DEPA, ASDEA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다.⁵⁰

45 한-미 FTA 제15.9조는 디지털상품을 ‘전달 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 (computer program, text, video, image, sound recording or other product that is digitally encoded, produced for commercial sale or distribu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주에서 동 정의가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상품의 무역이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단서를 두었다.

46 한-미 FTA 제15.3조는 ‘전달 매체’를 ‘현재 알려진 또는 향후 개발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상품을 저장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물리적 물체로서 그로부터 디지털 상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 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체, 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정의하였는바, ‘물리적 물체(any physical object)’며 디지털 상품을 저장, 송수신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7 한-미 FTA 제15.3조에 대한 각주2는 제15장의 상품분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FTA 당사국이 설립하는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8 CPTPP 제14.1조.

49 CPTPP 제14.1조의 각주 2는 ‘디지털 상품’은 ‘화폐와 같이 디지털화된 금융수단을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제14.2조는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관한 조치는 CPTPP의 해당 조항 즉, 제9장, 제10장, 제11장에서 다룬다고 규정한다.

50 USJDTA 제1조(g)항, DEPA 모듈3 제3.1조, ASDEA 부속서 A 제1조(g)항.

나. 디지털통상 규범의 범위

이 논문 II장에서 살펴본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양상을 고려하면, 이제 '디지털 제품에 관한 논쟁은 일부 사안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제품'에 적용되는 규범은 무관세 의무와 비차별 의무지만, 최근 도입된 디지털통상 및 디지털경제 협정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즉, 컴퓨팅설비, 소스코드, 인터넷 접속 등에 관한 규범이 있고 전자인보이싱, 전자결제, 온라인 소비자보호, 스팸메세지, 사이버보안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DEPA를 보더라도 디지털제품 이외의 많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디지털통상 규범의 적용 범위가 디지털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협정의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안에 이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데이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I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디지털무역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산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제품'의 실질적인 의미도 점차 넓어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상법률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의

모호성은 근본적인 쟁점 사안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융합적인 특성이 있는 디지털제품의 큰 영역이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되는 국제무역 체제에서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채택된 디지털통상 협정들은 기본적으로 국경간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무역, 투자 사안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제품의 범위에서 방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문화컨텐츠 온라인 플랫폼, SNS 등 서비스무역과 중첩되는 모호한 영역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비스무역 양허상 논쟁으로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시스템에 연결된 상품,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세 및 TBT 등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점차 더 복잡한 사안으로 제기 될 것이다.⁵¹

2. 디지털통상과 비차별 의무

비차별 의무는 국제무역 체제의 기본 원칙이다. 이 기본 원칙은 디지털통상 규범에도 핵심적인 의무로 도입되어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면 <표2>에 나타난 바

표2 디지털통상 규범의 비차별 의무

	CPTPP	USMCA	USJDTA	DEPA	ASDEA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4.4	19.4	8	3.3	6
개인정보 보호 조항의 비차별 의무	14.8	19.8	--	4.2	17
기타(전자결제 조항의 비차별 의무)	--	--	--	--	11

출처 :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⁵¹ 민한빛(2019),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자율주행시스템의 통상법적 규율 문제", 통상법률 통권 제142호.

와 같이, 기본적으로 모든 주요 협정이 디지털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협정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진된 ASDEA는 전자결제시스템 접근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도입하였다.

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의무는 한-미 FTA가 최초로 도입했고 이와 유사한 조항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다른 당사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비당사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거나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⁵² 이처럼,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가 디지털통상 규범의 기본 의무로 채택되고 있다.

한-미 FTA의 약한 의무(may)는 CPTPP 규범 이후부터 강행 조항(shall)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비차별 의무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적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금과 방송 분야를 제외하지만⁵³ 방송분야에 대해서는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⁵⁴ 또한, CPTPP 이후부터는 비차별의무 이행 때문에 지식재산권 규범과의 불합치가 일어

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되고 있는 바, 지적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차별 의무를 적용하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법률 기준을 고려해 본다면, 디지털통상 규범상 비차별 의무는 동종(like) 디지털 상품에 관한 판단과 동종 디지털상품을 불리하게 대우했는지에 관한 판단이 그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디지털통상 규범상 비차별 의무는 디지털 제품 생산 후 최초의 상거래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행위(즉,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를 그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상품의 공급에 관여한 광범위한 행위자(즉,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종 디지털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를 고려할 때 최종 공급자를 비교하여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는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제작자 등 디지털제품 공급에 일정부분 기여한 다양한 행위자에게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창작, 제작, 발행, 저장 등 디지털 제품 생산 및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행위 전반에 있어 불리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디지털 교역 속성상 제품과 서비

⁵² 한-미 FTA 제15.3조는 (1) 다른 당사국 영토 내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또는 (2)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당사국인 인(人)인 경우,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는 최혜국 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자국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는 내국민 의무를 규정한다.

⁵³ 한-미 FTA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의무에서 정부 보조금과 방송 분야를 제외했고 CPTPP, USJDTA, ASDEA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 보조금과 방송 분야를 제외하였다.

⁵⁴ USMCA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의무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예외만 규정하고 있다. USJDTA는 방송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외국자본참여율을 규제할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스가 통합되고 생산, 공급, 소비가 융합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 제품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까다로운 사안이 될 것이다.⁵⁵ 그러나 더욱 중대한 문제는 비차별 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이 광범위하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문제부터 경제 및 비경제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검토하는 문제까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 관행

디지털통상 규범의 비차별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도 적용된다. 협정 당사국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비차별 관행(practice)에 입각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이용자 모두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차별 의무는 중요한 제도적 시사점이 있다. 가령,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소비를 중단하거나 다른 경쟁사를 선호하고 소비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와 집행은 궁극적으로 기업 간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욱이 수입국의 보호제도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즉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디지털무역 원산지(국적)를 차별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CPTPP와 USMCA는 이 의무를 약한 의무(shall endeavor)로 채택했지만 DEPA와 ASDEA는 강행규범(shall adopt)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이 규범도 확산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채택된 문구는 비교적 단순하고 비차별 대우(treatment)가 아니라 ‘비차별 관행’ 채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⁵⁶

다. ASDEA 전자결제 조항과 비차별 의무

호주와 싱가포르의 핀테크 기업과 전자결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결제 확대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ASDEA 전자결제 조항은, 양 당사국이 결제시스템에 대한 국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⁵⁷ 이와 함께, 금융, 비금융 기관들이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에 접근할 때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⁵⁸ 이처럼 양국이 핀테크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디지털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과 안

⁵⁵ 이재민(2018), pp. 106-107, 110.

⁵⁶ DEPA 모듈4 제4.2조. Each Party shall adopt non-discriminatory practices in protecting users of electronic commerce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violations occurring within its jurisdiction.

⁵⁷ ASDEA 제11.1조.

⁵⁸ ASDEA 제11.2조. To this end, each Party shall:...(중략)...(c)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표3 디지털무역과 공공정책상 제한조치

	CPTPP	USMCA	USJDTA	DEPA	ASDEA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와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제한조치	14.11	19.11	11	4.3	23
컴퓨팅 설비 이용 자유와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제한조치	14.13	--	--	4.4	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이전 제한조치	--	--	15.4	--	--

출처 :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당국이 접속 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규제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에 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 규정은 모든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대우인지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FTA TBT 제도에 도입되고 있는 규범 중에서 조치 당국이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당국이 정당한 필요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위장된 보호주의를 일정부분 막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유형의 디지털 규범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의 균형

무역자유화와 공공정책 추구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제도는 통상규범상 널리 채택되고 있는 기본 규범이다. 디지털통상 규범도 디지털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정당한 공공정책상 시행되는 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협정이 정보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공공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협정은 컴퓨팅 설비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

가. 데이터 자유이동과 공공정책

디지털통상 규범으로 채택되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정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당사국 인(人)의 상업적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모든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정책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동을 규제할 수

financial institutions and non-financial institutions in relation to access to services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⁵⁹

이 규범은 핵심적으로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부분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서 정보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판단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즉, 기본적으로 상업적 행위를 위한 정보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상업적 행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리고 상업적 활동을 위한 데이터 이동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공공정책’이 동 원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수단이 되거나 위장된 방식 혹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 컴퓨팅설비 위치와 공공정책

상기 규정과 마찬가지로, 컴퓨팅 설비의 자유로운 상업적 사용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의 보안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다.⁶⁰ 즉, 자신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상업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컴퓨팅 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한데, ‘커뮤니케이션 보안과 신뢰 확보’가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제한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수단이거나

위장된 보호수단이 되는 것은 금지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 자유무역과 공공정책의 균형에 대한 쟁점 분석

이처럼,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역이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데이터교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기 규범 적용을 통해서 두 목적 사이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운용상의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컴퓨팅 시설 설치와 사용 문제에 있어 자유로운 상업활동 보장과 정당한 규제의 양립은 디지털경제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통상법을 관점에서 고려하면, 상기 조항들이 GATT 일반예외 조항을 통해서 구현되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ATT 제20조가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기 조항들은 TBT 협정 제2.2조의 불필요한 무역 제한을 금지하는 의무조항과 더 유사한 규범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¹ 그리고 이 TBT 조항의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본다면, 상기 조항들은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추구하는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인가, 같은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무역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대안 조치가 있는가의 기준에 의해서 이행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ATT 제20조 적용에 따른 예

⁵⁹ CPTPP 제14.11조.

⁶⁰ CPTPP 제14.14조.

⁶¹ 디지털통상 협정에는 많은 예외 조항이 도입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분석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외 인정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TBT 협정 제2.2조의 판정이 대부분 유보되었던 제도 운용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문제는 실제로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거나 컴퓨팅 설비 위치와 사용을 규제한 조치 국가는, 자신의 조치에 관하여 그 정당성, 필요성, 대안 조치의 부적절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엄밀히 말해서 국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이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⁶²

라. USJDTA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건

미국과 일본의 USJDTA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다른 디지털통상 협정들과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은 당사국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두 국가 제도의 상호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협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과 원칙적으로 같다.

그러나 USJDTA는 국제기구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의무, 그리고 국제 및 지역기구에서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협정과 차이가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이 양국이 지지할

국제기구와 표준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개인정보의 국경 간 흐름을 제한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필요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비례'하여 제한할 의무를 채택했다는 점이다.⁶³ 이 기준은 다른 협정에는 도입되지 않았고 미-일 협정에만 있다.

앞서 살펴본 다른 협정들이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관한 법적 요건으로 비차별 관행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일 협정의 필요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데이터무역을 더 강조하고 데이터무역 장벽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규제하고자 했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필요한' 수준으로, 그리고 '나타난 위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만 정보 흐름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국들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 규범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제한한 것으로 분석된다.

IV. 결론

최근 추진된 일련의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 규범에 관한 하나의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 기존 무역체제에 도입되었던 전자상거래 규정과 기타 관련 규정들이 디지털무역 체제로 편입되고 디지털무역과 디지털경제

62 WTO TBT 협정 제2.2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률 쟁점 연구를 참조한다.

63 USJDTA 제15.4조. The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compliance with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ing that any restrictions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 ar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the risks presented.

의 새로운 의제가 포함되면서 결과적으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체계가 발전하였다.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타결되고 다자 규범이 도입된 이후, 최근 도입된 디지털통상 규범의 중요한 역할과 제도적 기여를 더욱 명확하게 조명할 수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통상 질서를 정립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디지털 통상 규범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 협상은 CPTPP 협상과 USMCA 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 협정은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 디지털무역의 핵심 원칙과 기본 제도를 제시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기본 틀이 DEPA와 ASDEA 협상에 반영되었고, 동 협정들은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기술, 경제, 통상 현안을 통합하고 포괄함으로써 제도적 체계화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디지털통상 협정의 핵심 규범을 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국제무역 체제에서 제기되었던 통상법 쟁점에 비추어 디지털통상 규범 운용상 문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도입된 디지털통상 핵심 규범에는 전반적으로 제도적 불확실성이 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국제무역 체제가 그러했듯이,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의 불확실성, 입증책임 문제 등 실제 운용에 있어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호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상에서 구체적인 문안만을 추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즉, 구체성을 강화할수록 디지털무역의 미래적 상황과 잠재적인 사안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경제 전환이 최근 들어 가속화하고 지금도 한창 진행형에 있으므로, 디지털통상 협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규범과 제도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 협상이 이루어낸 중요한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규범들이 지역무역 체제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CPTPP부터 ASDEA까지 일련의 협상 과정이 소수 국가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매 협상 그 범위와 강도가 증폭되었던 점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이 소수 국가들이 디지털 경쟁력 확보와 개방에 대해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like-minded) 발 빠르게 추진한 협상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전략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다.

궁극적으로는, 지역무역 체제에서 형성된 디지털 제도 및 기술 네트워크가 고도화, 강화될수록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의 진입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이론이 이 자명한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팽창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계속되는 경쟁에 맞설지, 네트워크 밖에서 독자적인 방식을 구축하고 불확실한 도전을 계속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간 경쟁이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통합된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러한 관점에서 다자 규범과 통합된 질서 도입이 분절된 디지털경제의 비효율성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부터 CPTPP, USMCA, 그리고 DEPA와 ASDEA를 관통하는 기본 체제와 그 발전 양상은 향후 디지털통상 협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바가 크다. 그 발전 양상을 보면 디지털통상 협상이 다뤄야 하는 포괄적인 의제를 보여줄 뿐 아니라 디지털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통상 현안들을 해소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범적인 혹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글로벌 디지털통상 협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통상 전략과 정책 수립에 도움되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동철, 안덕근, “아날로그 체제하의 디지털무역-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131, 2016.

곽동철, “FTA 디지털무역과 기술표준”, 안덕근, 김민정, 「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박영사, 2020.

김민정, 양인창,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Vol.6, 2021.

김정곤,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2018.

민한빛,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 자율주행시스템의 통상법적 규율 문제”, 『통상법률』 통권 제142호, 2019.

박정준, “국제통상체제에서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연구-GATT/WTO 다자체제에서 FTA 복수체제로”,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8.

이재민,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와의 통상협정에 대한 합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2호, 2018.

이한영,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연구소, 2007.

이한영,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통상법률』 81, 2008.

이종석,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9.

Chen, Wallace and Clara Brandi, “Governing Digital Trade - A New Role for the WTO”,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Briefing Paper No 6/2019, 2019.

Mira Burri, “Data Flow and Global Trade Law”, *Big Data and Global Trad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ternet Regimes and WTO E-Commerce Negotiations, 2020.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Co-Conveners’ Update, 2020.

<협정문>

FTA 강국 KOREA 웹사이트,
<https://www.fta.go.kr/>

한-EU FTA 협정문(국문)

한-미 FTA 협정문(국문)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국문)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협정문(영문)

Comprehensive-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문(영문)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협정문(영문)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협정문(영문)

US-Mexico-Canada Agreement 협정문(영문)



Regulatory Development and Prospective Legal Issues for Digital Trade

Minjung Kim

Senior Researcher,
NRF Academic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mjk@snu.ac.kr)

This paper explore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gital trade law and examines prospective legal issues of certain provisions disciplining data flow, data protection and their relevant public policies, which are adopted in major trade agreements, including CPTPP, USMCA, USJDTA, DEPA and ASDEA. The analysis finds that the regional digital trade norms came to deal with diverse digital economic and technical agenda, and have strengthened key rules to make data flow freer. Nevertheless, the relevant legal elements, especially those incorporated in provisions that provide for 'digital products', non-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need to be further clarified so as to facilitate their 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parties' implementation,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efforts in the process of rule-making to reflect those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discussed in the paper.

Keywords : digital trad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Australia-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ASDEA)